

2017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6조 1,483억 8천 1백만원 대비 12.7% 증가(2조587억9천만원)된
18조 2,071억 7천 1백만원으로 증액된 수준임.

〈2017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2017년도 | | | 증감률 |
|-------------------|------------|------------|------------|-----------|------|
| | | 기정예산 | 추경예산 | 증감 | |
| 합 계 | | 16,148,381 | 18,207,171 | 2,058,790 | 12.7 |
| 시 세 | | 15,555,376 | 15,555,376 | - | - |
| 세외 수입 | 경상적 | 37,511 | 37,511 | - | - |
| | 임시적 | 555,494 | 555,494 | - |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순세계 잉여금 | - | 2,058,790 | 2,058,790 | - |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예산 | 2017년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15,555,376 | 15,555,376 | - | - |
| 보 통 세 | 13,753,517 | 13,753,517 | - | - |
| 취 득 세 | 4,007,054 | 4,007,054 | - | - |
| 주 민 세 | 478,803 | 478,803 | - | - |
| 재 산 세 | 2,166,398 | 2,166,398 | - | - |
| 자 동 차 세 | 1,054,541 | 1,054,541 | - | - |
| 레 저 세 | 126,768 | 126,768 | - | - |
| 담 배 소 비 세 | 634,255 | 634,255 | - | - |
| 지 방 소 비 세 | 1,055,931 | 1,055,931 | - | - |
| 지 방 소 득 세 | 4,229,767 | 4,229,767 | - | - |
| 목 적 세 | 1,568,562 | 1,568,562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258,985 | 258,985 | - | - |
| 지 방 교 육 세 | 1,309,577 | 1,309,577 | - | - |
| 지 난 년 도 수 입 | 233,297 | 233,297 | - |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 2017년 예산 | 2017년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세 외 수 입 (계) | 593,005 | 2,651,795 | 2,058,790 | 347.2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 37,511 | 37,511 | - | - |
| 공 유 재 산 임 대 료 | 10,849 | 10,849 | - | - |
| 기 타 사 용 료 | 1,057 | 1,057 | - | - |
| 증 지 수 입 | 603 | 603 | - | - |
|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 20,916 | 20,916 | - | - |
| 기 타 이 자 수 입 | 4,086 | 4,086 | - | -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 555,494 | 555,494 | - | - |
| 국 유 재 산 매 각 수 입 | 511,875 | 511,875 | - | - |
| 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 | 1,173 | 1,173 | - | - |
| 변 상 금 | 1,173 | 1,173 | - | - |
| 기 타 수 입 | 33,724 | 33,724 | - | - |
| 채 납 처 분 수 입 | 2 | 2 | - | - |
| 시 도 비 반 환 수 입 | 41 | 41 | - | - |
| 그 외 수 입 | 33,682 | 33,682 | - | - |
| 시 금 고 출 연 금 | 30,000 | 30,000 | - | - |
| 법 인 카 드 캐쉬 백 적 립 금 | 508 | 508 | - | - |
| 부 가 가 치 세 매 입 세 액 공 제 액 | 1,176 | 1,176 | - | - |
| 주 행 분 자 동 차 세 관 련 이 자 액 등 | 1,997 | 1,997 | - | - |
| 지 난 년 도 수 입 | 8,722 | 8,722 | - | - |
|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 - | 2,058,790 | 2,058,790 | - |
| 순 세 계 잉 여 금 | - | 2,058,790 | 2,058,790 | -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2,708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162억 1천만원 대비 5.03%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7년도 | | | 증감율 | |
|-------|-----------|-----------|---------|------|---|
| | 기정예산 | 추경예산 | 증감 | | |
| 총 계 | 2,162,142 | 2,270,883 | 108,741 | 5.03 | |
| 행정관리 | 소 계 | 782,238 | 782,238 | - | - |
| | 행정운영경비 | 1,910 | 1,910 | - | - |
| | 인건비 | 676,514 | 676,514 | - | - |
| | 사업비 | 103,814 | 103,814 | - | - |
| 교 부 금 | 1,379,903 | 1,488,644 | 108,741 | 5.03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별 | 2017 예산 | | 2017예산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대비 | |
|----------|-----------|-----------------|-------------------|---------|--------|
| | 당초 | 최종 (6.30 현재) | | 증감 | 비율 |
| 합 계 | 1,379,903 | 1,379,903 | 1,488,644 | 108,741 | 7.88% |
| 재정보전금 | 1,054,832 | 1,054,832 | 1,110,655 | 55,823 | 5.29% |
| 시세 징수교부금 | 325,071 | 325,071 | 377,989 | 52,918 | 16.28% |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조 58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 2017년 예산 | 2017년도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대비 | |
|-----------------|----------|-------------------|-----------|-------|
| | | | 증 감 | 증감률 |
| 내부수입등 및 내부거래 | - | 2,058,790 | 2,058,790 | 100.0 |
| 순세계잉여금 | - | 2,058,790 | 2,058,790 | 100.0 |

-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조 58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1조 6,887억 8천5백만원에 비해 3,700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균형예산과 상충되는 예상집행 상황이라고 하겠음.
- 특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2조 3,057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21.9%가 증가한 것은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1조 7,202억원)과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3,690억원)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초과세입금 | 집행잔액 | 보조금 집행잔액 |
|---------|---------------|---------------|-------------|------------|
| 2016(A) | 2,058,790,057 | 1,720,219,164 | 368,979,775 | 30,408,882 |
| 2015(B) | 1,688,784,895 | 1,268,883,818 | 450,996,733 | 31,095,656 |
| 증감(A-B) | 370,005,162 | 451,335,346 | -82,016,958 | -686,774 |

-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면밀한 세수 추계에 의하지 아니한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예측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국의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재정보전금(558억2천3백만원)”, “시세 징수 교부금(529억1천8백만원)” 등 2개 사업에 1,087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 기정예산 | 증 감 | | | 추경안 | 추 경 사 유 |
|----------|-----------|-----------|---------|-----|-----------|--|
| | | 계 | 증 액 | 감 액 | | |
| 2개 사업 | 1,379,903 | 1,488,644 | 108,741 | - | 1,488,644 | |
| 재정보전금 | 1,054,832 | 1,110,655 | 55,823 | - | 1,110,655 | ○2016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부족 금액 발생에 따른 증액 조정 |
| 시세 징수교부금 | 325,071 | 377,989 | 52,918 | - | 377,989 | ○2016년 시세 초과징수분의 3%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반영 필요 |

가.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26조 내지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50%인 특별시분재산세를 자치구에 전액 균등 교부하는 법정 경비임.
- 금번 추경은 재정보전금 중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정산분 558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계 | 906,538 | 933,536 | 982,902 |
| 종로구 | 36,262 | 37,342 | 39,316 |
| 중구 | 36,262 | 37,342 | 39,316 |
| 용산구 | 36,262 | 37,342 | 39,316 |
| 성동구 | 36,262 | 37,342 | 39,316 |
| 광진구 | 36,262 | 37,342 | 39,316 |
| 동대문구 | 36,262 | 37,342 | 39,316 |
| 중랑구 | 36,262 | 37,342 | 39,316 |
| 성북구 | 36,262 | 37,342 | 39,316 |
| 강북구 | 36,262 | 37,342 | 39,316 |
| 도봉구 | 36,262 | 37,342 | 39,316 |
| 노원구 | 36,262 | 37,342 | 39,316 |
| 은평구 | 36,262 | 37,341 | 39,316 |
| 서대문구 | 36,262 | 37,341 | 39,316 |
| 마포구 | 36,261 | 37,341 | 39,316 |
| 양천구 | 36,261 | 37,341 | 39,316 |
| 강서구 | 36,261 | 37,341 | 39,316 |
| 구로구 | 36,261 | 37,341 | 39,316 |
| 금천구 | 36,261 | 37,341 | 39,316 |
| 영등포구 | 36,261 | 37,341 | 39,316 |
| 동작구 | 36,261 | 37,341 | 39,316 |
| 관악구 | 36,261 | 37,341 | 39,316 |
| 서초구 | 36,261 | 37,341 | 39,316 |
| 강남구 | 36,261 | 37,341 | 39,316 |
| 송파구 | 36,261 | 37,341 | 39,317 |
| 강동구 | 36,261 | 37,341 | 39,317 |

- 현재,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과다하게 발생(도봉구(494억원) 대비 강남(2,228억원) 4.5배) 재정보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25개 자치구별 형평성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 추진실적〉

| | |
|--------|---|
| 2013년도 |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2배(강남 3,287억, 강북 216억)에서 4.4배(강남 1,985억, 강북 450억)로 완화 |
| 2014년도 |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2배(강남 3,446억, 강북 226억)에서 4.4배(강남 2,081억, 강북 472억)로 완화 |
| 2015년도 |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9배(강남 3,702억, 도봉 233억)에서 4.5배(강남 2,228억, 도봉 494억)로 완화 |

나.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에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 근거하여,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써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법정 경비로써,
- 자치구에 위임하는 취득세 등 7개 세목의 초과 징수된 세입 1조 7,639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29억 1천 8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 기정예산 | 증 감 | | | 추경안 | 추 경 사 유 |
|----------|---------|---------|--------|-----|---------|--------------------------------------|
| | | 계 | 증 액 | 감 액 | | |
| 시세 징수교부금 | 325,071 | 377,989 | 52,918 | - | 377,989 | ○2016년 시세 초과장수분의 3%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반영 필요 |

〈 2016년 시세 징수교부금 추경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초예산(A) | 결산 실적(B) | 차액(B-A) |
|-------|------------|------------|-----------|
| 시세 예산 | 10,044,720 | 11,808,664 | 1,763,944 |
| 징수교부금 | 301,342 | 354,260 | 52,918 |

○ 다만,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상(「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1))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써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법정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조정하는 것인바, 재무국의 정확한 세입추계와 함께 징수교부금 예산 집행상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 7월 17일 기준,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향후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2016년 “시세 세원발굴 지원”사업의 ‘기타보상비’는 시민제보에 의한 세원발굴 실적이 전무하여 운영관리비가 전액불용 처리된 바 있어, 제274회 정례회(2016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안)) 결산안 심사시에도 지적 받은 바,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산출근거나, 수요예측의 부실 및 세부집행 계획이 없는 포괄적인 집행계획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재무국은 집행저조 사업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 집행상 비효율성 문제의 사전 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8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 사 업 명 | 예산 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6월말 현재 지출액 | 집행 잔액 | 불용률 |
|-----------------------|----------|-------------|------------------|----------|-------|
|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 857,007 | 53,148 | 53,148 | 803,859 | 93.8 |
|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 162,163 | 21,486 | 21,486 | 140,677 | 86.8 |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 429,529 | 73,805 | 73,805 | 355,724 | 82.8 |
| 시세 세원발굴 지원 | 130,000 | 18,526 | 18,526 | 111,474 | 85.7 |
|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 355,200 | - | - | 355,200 | 100.0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 518,200 | 491,200 | 1,200 | 517,000 | 99.8 |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김정덕